
2018년도 제3차 이사회 개최

2018. 7. 30(금)

SBCR  에스비씨인증원

안 건

□ 의결사항

- (제1호의 안) 취업규정 개정(안)의결의 건
- (제2호의 안) 계약사무처리요령 개정(안)의결의 건
- (제3호의 안) 직제규정 개정(안)의결의 건

의안번호	제 1 호
년월일	2018년 7월 30일

의
결
사
항

취업규정 개정(안)

제안부서	경영지원팀
제출년월일	2018년 07월 30일

1. 의결주문

- 취업규정 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사유

-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결과 및 후속조치('18.1.29)에 따라 채용비리 예방을 위한 (공직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)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
- 산하기관(중소벤처기업부)의 부패방지시책평가 추진계획에 따른 과제 수행
- 중진공 '18년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(①상충되는 조항별 내용 정비, ②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위원 구성) 이행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부의 함.

3. 주요내용

-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(권익위원회)

구 분	관련조항	내용
채용과정 등 내·외부 통제강화	제8조(기능)	채용공고 내용 임의 변경 금지 - 채용원칙,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규정 추가
	제12조(채용의 원칙)	채용절차, 채용방법 명시 - 변경사항 발생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
	제12조1(채용전형방법 등)	채용전형 방법 구체적 명시 - 서류심사, 면접심사, 신체검사에 대한 내용 추가
피해자 구제방안 마련	제12조2(외부위원 참여)	외부위원 구성·운영의 공정성 확보 - 서류·면접심사시 외부위원50% 이상 참여
	제13조2(채용비리 피해자 구제)	적극적 구제 방안 마련 - 예비합격자순번 부여, 이의제기 절차 운영등
	제14조(채용결격사유)	채용결격사유 근거 마련 - 채용결격사유 비위면직자, 채용비리 행위자등 추가
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제도마련	제34조(징계시효)	- 채용비위자 징계시효 5년으로 연장
	제40조1(채용비리 관련업무 배제)	- 해당 임·직원 즉시 배제
	제40조2(직권면직)	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제도마련 -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직권면직

구 분	관련조항	내용
채용비리 연루자에대한 무관용 원칙 제도마련	제40조3(채용비위 내용공개)	- 채용관련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
	제40조4(채용비위 행위자 명단공개)	- 유죄판결 확정된후 가중처벌 되는 경우 공개
	제40조5(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)	- 채용비리관련자 인사상 불이익 조치

○ 산하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권고과제 (중기부)

구 분	관련조항	내용
부패취약 분야 개선	제32조(징계의 양정)	강화된 징계양정기준 마련 - 부패공익신고 위반자 징계처분기준 마련
	제36조1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안내)	취업제한 안내규정 마련 - 부패행위로 면직된자에 대한 징계처분통지서 교부

○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이행 (중진공)

구 분	관련조항	내용
규정관리업무 정비	제12조2(외부위원 참여) *권익위 권고과제와 중복	- 외부위원 구성·운영의 공정성 확보
	제22조(특별승진)	제8조(인사위원회 기능)에 의거 - 인사위원회 심의의결후 특별승진 가능케 규정 정비
	제30조(징계의 종류 및 효력)	제23조(승진제한)에 의거 - 징계 종류별 상이한 승진제한 기간을 일치

○ 기타 관련 규정 정비

구 분	관련조항	내용
규정정비	제107조(특별공로금)	관련 조항 수정
	제112조(퇴직금지급의 특례)	관련 조항 수정
	제114조(이사회결의)	관련 조항 수정

○ 징계양정기준 강화

(개정)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,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(능동): 정직·면직
 → 면직으로 강화

(신설) 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 보호 위반자 징계양정기준

부패공익신고 방해 및 신고자 보호 위반자 징계양정기준

징계사유	면직	정직	감봉	견책
조사완료전 피신고인 및 신고내용 공개				고의
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				중과실
신고자 불이익조치 위반		고의	고의	고의
신고방해 및 신고취소 강요			고의	고의

4. 참고사항

- 근거규정 :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
- 별첨 : 취업규정 개정(안) 신구조문대비표

의안번호	제 2 호
년월일	2018년 7월 30일

의
결
사
항

계약사무처리요령 개정(안)

제안부서	경영지원팀
제출년월일	2018년 07월 30일

1. 의결주문

- 계약사무처리요령 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사유

- 계약사무에 대한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, 중진공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(계약사무처리 요령의 수의계약 기준금액과 *국가계약법 기준금액이 상충) 이행을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부의 함.

*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3. 주요내용

- (추가 신설) 계약의 원인이 되는 업무담당 부서장에게 계약업무 위임
 -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국내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- 물품·공사·용역 이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-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(개정) 국제법에 의한 수의계약 범위 적용
 - 별첨 참조 : 계약사무처리요령 개정(안) 신구조문대비표

4. 참고사항

- 근거규정 :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
- 별첨 : 계약사무처리요령 개정(안) 신구조문대비표

의안번호	제 3 호
년월일	2018년 7월 30일

의
결
사
항

직제규정 개정(안)

제안부서	경영지원팀
제출년월일	2018년 07월 30일

1. 의결주문

- 직제규정 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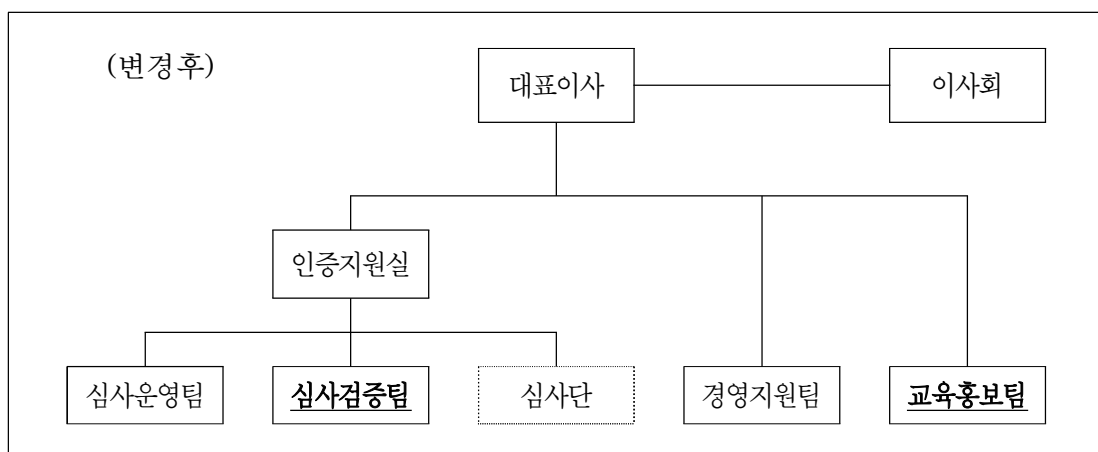
2. 제안사유

- 중진공 전문인력(전담교수, 컨설턴트) 파견계약이 ‘18.7.31일자로 사업종료됨에 따라 조직의 편제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부의 함.

3. 주요내용

- (변경) 교육검증팀 → 심사검증팀
- (폐지) 인력지원팀 → (신설) “교육홍보팀”

- 교육사업 및 인증홍보 확대를 위한 직제 편제



4. 참고사항

- 근거규정 :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
- 별첨 : 직제규정 개정(안) 신구조문대비표